

교수업적평가규정

제1장 총 칙

- 제1조**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고 한다) 교직원인사규정 제3장과 제4장에 근거하여 교수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** (적용 범위) 본 대학교 전임교원에 대한 평가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**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교수업적평가(이하 “평가”라 한다)라 함은 전임교원의 교육, 연구 및 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.
- 제4조** (평가 대상) 평가의 대상은 본 대학교 정년 트랙과 비정년트랙을 모두 포함하는 전임 교원(이하 “교수”라 한다)으로 한다. 단,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그 평가를 달리 한다.
- 제5조** (평가 원칙) 평가는 교수개인의 교육·연구·봉사 등 능력계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학문과 전공계열의 특수성에 따라 형평성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하여 평가 기준과 원칙은 반드시 사전에 공개되어야 한다.
- 제6조** (평가주기 및 시기) 평가주기는 1년 단위로 하며, 평가 대상 시기는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, 승진 및 재임용 기간이 이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조정한다.<개정 2012. 9. 26.>

제2장 교수업적평가위원회

- 제7조** (구성) ① 교수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,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.
- ②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과장으로 한다.
- 제8조** (기능) 평가위원회는 평가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- ① 평가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심의
- ② 평가에 관계되는 사항
- 제9조** (회의)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교원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 교원을 참석시켜

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3장 평가 영역

제10조 (평가영역 및 정의) 평가는 교육영역, 연구영역, 봉사영역에 관한 사항으로 하
되 각각 평가영역별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.

- ① 교육영역은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(강의, 실습 등)하고 지도하는 제반 교육
활동을 포함한다.
- ② 연구영역은 해당 전공분야의 학문적 활동과 연관된 모든 형태의 연구 및 창작활
동을 포함한다.
- ③ 봉사영역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교내, 교계 또는 사회에 제공·기여하는 모든 활
동을 포함한다.

제11조 (평가 자료와 영역별 배점) 교육, 연구, 봉사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자가 제출
한 관련 구비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, 각 영역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시행세칙
에 따른다.

제4장 평가 절차

제12조 (업적보고서 등의 제출) ①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서식에 따라 교
수업적보고서를 작성(전산입력)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12월 말일까지 교무처에 제출
하여야 한다. 제출기한을 경과하거나 증빙자료 및 서류가 미비 된 업적은 평가대상
에서 제외된다. 단, 출판될 예정인 논문 또는 저서는 게재예정증명서 또는 출판예정
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5. 30., 2012. 9. 3.>

- ② 비정년트랙 교수는 별도의 평가규정에 의해 평가한다.
- ③ 기간제 재임용, 계약제 재임용 및 승진 등으로 필요한 경우 그 제출 시기를 조정
할 수 있다.
- ④ 각 행정부서는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받았을 경우 이를 작성하여 교무처를
경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 (평가방법) ① 위원회는 수합된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영역별로 나누어 평가한
다.

- ② 승진, 재임용 및 재계약의 경우 시행세칙 '제5장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관리'에 따
른다.
- ③ 연구휴직 및 일반휴직 기간은 평가를 유보하고 기본점수를 부여한다.
- ④ 정교수로서 정년퇴직을 3년 남겨놓은 경우 연간 18학점 강의를 하고 평가면제
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. 세부사항은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
에 따른다. <개정 2012. 5. 30.>

제14조 (평가결과의 통보) 위원장은 평가완료 후 결과를 2주 이내에 해당교원에게 통
보한다.

- 제15조** (재심신청 및 재심의)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수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재심위원회는 5인 이내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에 따른 심사 결과를 재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

- 제16조** (평가결과의 활용) ①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모든 교수의 인사 관련 및 연봉계약 자료로 활용한다.
- ②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하거나 연구보조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 휴직 및 해외연수 교수선정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.
- ③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점수배정 등은 시행세칙에 따른다.
- 제17조** (평가결과 관리 및 지원)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교무처가 관장하되,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부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제6장 보칙

- 제18조** (비밀유지) ① 교수업적평가에 관여하는 평가위원과 담당직원은 업무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 당사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.
- ② 교수업적 결과는 활용 목적 이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9조** (시행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.
- 제20조** (기타 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폐기) 이 규정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. <개정 2011. 1. 28.>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